

#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23· 3· 14 조례 제191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인학대”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, 가혹행위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민의 책무)** 이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
2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
4.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방교육)** ① 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(이하 “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
2.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.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(관련 정보의 제공)**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업비의 지원)**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의 구축)**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